

증여세 ⇒ 교통공사 해당없음

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채무를 면제받았을 경우 그 증여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.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자연인과 비영리법인에게만 있고 영리법인에게는 없으나 영리법인에게 증여재산이 귀속될 경우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에 같음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음

소득세 ⇒ 교통공사 해당없음

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. 국세이며, 직접세이다.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,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됨

법인세 ⇒ 교통공사 해당(적자기업 법인세 미발생)

법인의 소득(연결통로 등 무상취득자산 포함)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(기업)에게 부과하는 조세. 국세·직접세·보통세에 속하며, 일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득세의 성격을 가짐

- "수익금-손실금=세무적 이익"의 과세체계 개념으로서 적자발생시(회계연도 기준)는 법인세 미발생(면제)
- ※ 연결통로 무상기증자산의 회계연도 내 적기취득으로 법인세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

부가세 ⇒ 교통공사 해당(연결통로 무상기증자에게 사용/수익권 등 반대급부 제공시 발생)

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그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, 무상사용수익과 결부된 기부채납(무상기증)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
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있음

- ✓ 무상기증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리를 제공할 경우 공급(제공)하는 우리공사(공급자)에게 부가세 신고의무(국세청에 부가세 납부)가 있으며,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(공급받는 자)는 무상기증금액 외에 추가로 부가세 비용 10%를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함
- 사용/수익권(반대급부) : ①수익조건부 기부채납(일정기간 무상사용), ②관리운영권, ③사용수익권 위탁

※ 현행 무상취득 연결통로는 우리공사에서 유지관리하므로 사용/수익권 제공에 대한 연관성이 없는 반면, 과거 무상기증 연결통로 대부분을 건물주가 유지관리하고 있어 국세청 세무조사시 부가세 과세여부 검토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반대급부 제공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짐

⇒ 건물주 측에서는 지하철 이용시민의 연결통로 보행편의를 위한 수단으로서 연결통로를 단순히 관리만하므로 사용/수익권 제공과는 무관하므로 부가세 비과세로 결론